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027 제출연월일: 2025. 4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(諸元)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,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우주항공청장"을 "우주항공청 장(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3조,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 한 제원(諸元)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에 해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2항의

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1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
 - 2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 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11조(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) 제11조(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)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----- 우주항공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장(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 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 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3 조,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) 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 라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 장에서 동일한 제원(諸元)의 우 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 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 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 략) 항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①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 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